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578호 2018. 09. 27.(목)

고시

○ 사천시 고시 제17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-----2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고시

사천시 고시 제 2018-171 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9. 27.

사 천 시 장

- 1. 점용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8-5호 (2018. 9. 17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O PE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-2번지선 공유수면
- 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O 신고번호 : 제2018-9호
 - **○** 공사기간 : 2018. 9. 19. ~ 2018. 10. 18.
- 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9. 18.
- 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O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 야 합니다.
 -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